

의안 번호	2054	【우정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】
		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. 27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3. 1. 27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2. 8.(수)

2. 제안설명 요지 (정책사업단장 민병률)

가. 제안이유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사업명 : 우정지구 재개발정비사업
- 위치 / 면적 : 우정동 407번지 일원/95,600㎡
- 건폐율/용적률 : 18.04%/246.31%
- 세대수 : 1,638세대
- 주요내용 :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

다. 근거법규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제2항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옥범)

- 본 의견청취안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령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제17조(정비구역 지정·고시의 효력 등)①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·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된 것으로 본다.<개정 2018. 6. 12.>

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·고시(변경 결정·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·고시된 것으로 본다.